

답 변 서

사 건 2012추15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대법원 귀중

목 차

1. 이 사건 제소의 경위..... 1
2. 이 사건 조례의 근거법령..... 2
 - 가. 교육기본법
 - 나. 초·중등교육법
 -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 답변서의 구성..... 3
 - 가. 이 사건 심판 대상의 문제
 - 나. 원고 주장의 개요
4. 이 사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나. 이 사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직무권한’에 관한 규율일 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2) 학교장 등의 ‘인권보장책무’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다. 소결론
5.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인권보장규범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7
 - 가. 이 사건 조례가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원고 주장의 요지
- 2)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의 성격
- 3) 이 사건 조례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 4) 소결

나. 학교장 등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원고 주장의 요지
- 2) 인권보장규정이 직무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의 문제점
- 3) 이 사건 조례 제6조의 문제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금지되는 체벌의 범위
나) 「초·중등교육법령」 해석의 문제
다) 소결

다. 소결론

6.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4

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의 요건(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위원회 등의 규정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하여 권한배분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7. 원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문제삼은 일이 없습니다..... 17

8. 결 론..... 19

답 변 서

사 건 2012추15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제소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합니다)를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1. 1. 26. 이 사건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례는 공포한 날인 2011. 1. 26.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이 사건 조례 부칙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날인 2011. 1. 26.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조례의 근거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¹⁾

(별첨)

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현재 195개국이 비준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 9. 25. 위 협약에 서명하고, 1991. 12. 20. 이를 비준하였으므로, 위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참조).

3. 답변서의 구성

가. 이 사건 심판 대상의 문제

대법원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2).

이 사건 조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2012. 1. 20.)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디. 이 사건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7항의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도록 한 취지는 재의결 심의 대상과 이후 소송 제기를 통한 분쟁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의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위 ‘나’항의 조례안 중 동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동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의요구시 위 명칭변경부분을 이의사항으로 지적한 바 없고 소송에서 비로소 내세운 주장인바,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단체장이 재의요구시에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명칭변경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 제36조 [별표 4]에 대하여는 재의요구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았으므로(갑 제2호증)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

송(「지방자치법」 제107조제4항)과 그렇지 않은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같은 조 제7항)의 심판 대상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원고가 “재의요구 요청”(갑제3호증)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의 재의요구안(갑제2호증의2)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을 원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아래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의 아래 5가지 이의사항 중 법령 위반의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심판 대상이 한정되어야 합니다.

2012. 1. 9.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명의의 재의요구안의 이의사항

- ①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가능성이 있고,
- ② ‘학생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③ 조례안 제17조 제3항 학생집회의 자유는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④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성적 지향’은 성(性)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性)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⑤ 조례안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조례안 제12조의 두발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과 제13조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다만,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는 달리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 원고 주장의 개요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조례의 효력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조례가 ①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②일부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③그 밖에 조례 집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을 앞선 법령 위반 사유의 주장과 별도의 항목으로 묶어 서술하며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항부터 원고의 이러한 세 가지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는 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4. 이 사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례 중 다수의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이하 '학교장 등'이라 합니다)의 권리(또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 이 사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조례 제1조)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가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장 등의 권리(또는 권한)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예시하고 있는 각 조항들(소장 4면 이하 참조)은,

1) ‘직무권한에 관한 규율’일 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갖습니다(「교육기본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조). 한편, 교사의 교육권은 원고도 언급하다시피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직무권한으로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며(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결정 참조), 이러한 직무권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조례는 학교장 등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에 근거하여 교장과 교원의 ‘직무권한’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교육 자치 사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임을 요하는 조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학교장 등의 ‘인권보장책무’에 관한 규정을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권규범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무를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마련할 적극적인 책무를 국가 등 일정한 수범자들에게 부과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적극적 책무를 지게 되는 수범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각 조항들은 모두 학생 인권 보장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 권규범의 수범자인 학교장 등이 부담하게 되는 책무들을 확인하고 구체화하 는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인권보장책무 규정들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상의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가 아 니므로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적법합니다.

5.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인권보장규 범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가. 이 사건 조례가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등을 침해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가 관계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에서 규 율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 시·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등을 규정 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2)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의 성격

학교의 장(또는 설립자)은 ①법령의 범위 안에서 ②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합니다)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학칙의 제정권한은 일차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사항이나, 인가권자로서 학칙 제정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공·사립학교의 경우)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립학교의 경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학칙의 제정은 학교장의 전권사항이 아니라 제한이 가능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학칙의 내용을 부당하게 과다제한하거나 학칙의 자율영역을 전혀 남겨놓지 않는 등 법에서 부여한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청이 조례 등을 통해 이를 규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율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지방교육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이 사건 조례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어떠한 학칙이든 이 사건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으로 제정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의 제정으로 학칙의 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학칙제정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받는다라는 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소장 6~7면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항들은 모두 학생의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는 규정들로서 이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내용의 학칙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학칙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³⁾.

나) 이 사건 조례가 개별 학교에서 학칙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률적·획일적 규율을 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 조례는 학생인권에 관해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학칙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학교별로 개별 학교의 특성을 살려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는 복장의 자유(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폰 등의 소지 및 사용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가 일률적·획일적 규율을 통해 학칙제정 등 학교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부당한 것입니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령상의 학생인권보장의 원칙을 구체화하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학교에서 학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과 그 내용을 구체화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학교장 등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의 규칙과 그 운영이 협약의 인권규범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2조 제2항(개성을 실현할 권리 중 두발의 자유), 제13조 제4항(사생활의 자유 중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제16조 제3항(종교의 자유), 제18조 제4항, 제5항(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 제3항, 제4항(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예 참여할 권리), 제20조 제1항(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의 각 규정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교장 등의 다양한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2) 인권보장규정이 직무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의 문제점

직무권한의 인정범위의 문제는 인권(또는 기본권) 보장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무권한의 행사는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권한의 행사라면 인권(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위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항들은 모두 학생의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인권보장규정들이 학교장 등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거꾸로 말해 학생의 인권을 학교장 등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권(또는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헌법」 제37조 제2항), 직무권한과 비교형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조례 제6조에 대해서는 원고가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이 이른바 ‘간접체벌’할 권한을 학교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조례 제6조의 문제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금지되는 체벌의 범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37조 (a)항 본문에서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처벌의 의미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로서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⁴⁾. 이와 같이 이른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처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협약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가 그 보장을 확인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에 해당하고 나아가 「헌법」 제6조에 의해 이 사건 조례의 상위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나) 「초·중등교육법령」 해석의 문제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General comment No.8, para. 11) 참조

“11. 본 위원회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은 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 손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예를 들면, 치는 것, 흔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그 예로 비누로 아동의 입을 세척하거나 매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체적인 처벌은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 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5. 아동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6, 155~156면)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본문). 원고는 체벌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가 학칙 기재사항으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이른바 ‘간접체벌’할 권한을 학교장 및 교사에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첫째**, 「초·중등교육법」의 어디에도 이른바 ‘간접체벌’할 권한을 학교장 등에게 부여하는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동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기타의 방법’이라는 문구는 교사에게 징계 외의 지도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징계에 속하거나 징계보다 더 가혹한 ‘체벌’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조항이 학생의 지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하는 ‘간접체벌’의 방법이 학생 지도의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접체벌’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위법률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또한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소

위 '간접체벌'의 방식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경우 또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해 금지되는 신체적 처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위법률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즉,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위 「초·중등교육법령」의 각 조문들을 종합하여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서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셋째, 학칙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이때 법령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칙은 위 협약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해진다는 점에서도, 원고와 같이 학교장 등에게 학칙에 따라 학생을 '간접체벌'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간접체벌'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간접체벌'을 징계·지도의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서울특별시가 조례로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일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조례 제6조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령」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인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인권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조례가 의결된 직후인 2012. 1. 3.경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 사건 조례에 대하여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기호(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이 사건 조례의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피고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을제1호증 보도자료 「UN 인권고등판무관실“서울시학생인권조례”환영!» 참조).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2012. 2. 9.경 이 사건 조례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어 적법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을제2호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379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참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권보장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달리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의 요건(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소장의 2. 라. 내지 마. 항(11면 내지 15면)에서 이 사건 조례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을 추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조례에 법률상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앞선 주장들과 별도의 목차로 분리되어 서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대법원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법령 위반에 관한 것이 아닌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장들입니다.

한편 이 사건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사무는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단위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교육자치사무가 명백하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방자치법」 등의 근거에 따라 그 사무를 통제·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원고의 무리한 제소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법령 위반과 관계가 없어 법적으로 무의미한 주장들인 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들 중 법령 위반을 문제삼은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 소장 2. 라. 3)항의 주장(12면 이하)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위원회 등의 규정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하여 권한배분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33조 학생인권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조례 제38조의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그 설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조례 제38조 제6항),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청 소속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교육감 사무 일부의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에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조례 제39조 제9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해촉에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그 직무의 특성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사후적, 소극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례 제33조의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의 심의·자문 기구로, 그 주요 업무는 교육감에 대한 권고와 의견 제시이고 그 구성도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3조에서 학생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심의·자문 기구로서의 학생인권위원회의 의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것이고 교육감이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교육감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교육위

원회)가 개입하거나 그 활동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7. 원고는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문제 삼은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각각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양 조례'라고 합니다)가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 조례는 앞선 위 양 조례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실은 위 양 조례에도 모두 공통되는 사실입니다.

즉, 이 사건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관계법령상 학칙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 양 조례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조례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학교장 등의 다양한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의 내용들, 즉,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제12조 제2항), 사생활의 자유, 특히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의 허용(제13조), 종교의 자유(제16조 제3항),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에 관해 위 양 조례 역시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표 참조).

[표]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주요 조항 비교⁵⁾

영역	주요 내용	경기	광주	서울	전북(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함	○	○	○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함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	○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함	○	○		○
개성을 실현할 권리	-교육감과 학교장은 가정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학생 의사에 반한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를 금지함	○	○	○	○
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가능하다고 규정함		○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일괄 검사를 금지함	○	○	○	○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단,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제·개정된 학교규칙으로 규제 가능	○	○	○	○
양심·종교의 자유	-급식비 미납 등 학생의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금지	○	○	○	○
	-특정 종교행사 참여 또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거나 사실상 우대하는 등 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금지함	○	○	○	○
의사 표현의 자유	※서울은 종교 자유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	○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전북은 집회 또는 단체활동 참여 권리를 추가로 명시함				
	※서울은 학교장 등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되 학내 집회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자치조직 구성·활동, 학교규정 제·개정, 정책결정 참여 권리	○	○	○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광주제외) 설치·운영	○	△	○	○
	-학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가능				○

그런데 위 양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각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재의 요구 지시를 하거나 제소를 하였던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유독 이 사건 조례에 대해서만 위 양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문제 삼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고가 그 동안 위 양 조례에 대해 법령 위반을 문제 삼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신의 감독의무를 해태해온 것이 아닌 이상, 위 양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379호, 2면

8.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으며,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상의 인권규정들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점도 없어 적법합니다.

현재 이 사건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앞서 제정된 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들은 모두 순조롭게 시행 중입니다. 원고는 유독 이 사건 조례만을 문제삼으며 법령 위반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펼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무리한 소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교육현장에 보편적인 인권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된 이 사건 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1호증 보도자료 「UN 인권고등판무관실“서울시학생인권조례”환영!」
2. 을제2호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379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012. 3.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혜 인

변호사 류 민 희

변호사 서 선 영

변호사 김 동 현

변호사 김 수 정

변호사 정 정 훈

대법원 귀중

[별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일 1989. 11. 20/발효일 1990. 9. 2/당사국 수 195/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단, 제43조제2항 개정(채택일 1995.12.12/발효일 2002.11.18)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

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

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

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

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겨져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 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

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 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 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